무 역 법

(TRADE ACT)

무역법은 1974년에 제정되었으며, 의회가 행정부에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을 부여함에 의하여 무역자유화를 위한 의회의 지원을 규정한 법이다. 신속처리권한은 1994년에 폐지되었으나 2002년 개정된 무역법에 의하여 재부여 되었다. 무역법은 총 6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절은 대통령 및 무역대표부의 무역협정에 관한 협상 및 그 권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1) 미국의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을 촉진하고 개방 및 비차별적인 세계무역을 통하여 미국과 외국간의 경제적 관계의 강화, (2) 미국의 통상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동등한 경쟁적 기회를 보장하는 기초 위에서 무역장벽의 조화, 축소, 철폐, (3)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개정을 포함하여 국제무역관계에서 공정과 형평의 성립, (4) 불공정 또는 부당한 수입경쟁에 대한 미국산업 및 노동력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제공하고 국제무역흐름의 변화를 조정하기 위한 공동체, 근로자, 회사, 산업의 지원 (5) 비시장경제에서 미국통상을 위한 시장기회의 개방 (6) 미국 시장에서 저개발국가의 상품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이용을 제공함에 있다.

무역법 제1절은 제1부. 관세율 및 기타 무역 장벽 제2111조. 무역협정에 관한 기본적 권한 제2112조. 무역장벽 및 기타 무역왜곡 제2113조. 전체적 협상 목표 제2114조. 부문별 협상 목표 제2114a조. 서비스, 해외직접투자, 첨단과학기술제품의 무역에 관한 협상 제2114b조. 서비스의 국제무역에 관한 규정 제2114c조. 서비스 무역, 연방정책의 발전・조정・이행, 직원 지원 및 기타 지원, 영향을 받지 않는 특별서비스 부분의 권한, 집행 기능 제2114d조. 대외수출요건, 축소 및 제거에 관한 협의 및 협상, 제품 또는 서비스의 진입의 제한과 배제, 유보조항, 적절한 보상권한 제2114e조. 첨단과학기술산업에 관한 협정의 협상 제2115조. 양자간 무역협정 제2116조. 개발도상국과의 협정 제2117조. 국제 긴급수입제한조치절차 제2118조. 공급에 대한 접근 제2119조. 스테이징 요건 및 라운딩 권한 제2부. 기타 권한 제2131조. GATT 개정에 관한 지출권한 제2132조. 국제수지에 관한 권한 제2133조. 보상권한 제2134조. 관세 협상을 위한 2년의 잔여 권한 제2135조. 종료 및 철회 권한 제2136조. 상호 비차별적 대우 제2137조. 국가안보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한

품목의 유보 제2138조. 삭제 제3부. 협상에 관한 공청회 및 자문 제2151조. 국제무역위원회의 자문 제2152조. 행정부 및 기타 기관의 자문 제2153조. 공청회 제2154조. 제안의 필요조건 제2155조. 사적 및 공적 부문의 정보 및 자문 제4부. 미국무역대표부 제2171조. 구조, 기능, 권한 및 인원 제5부. 대통령의 행위에 관한 의회의 절차 제2191조. 비관세장벽에 관한 무역협정을 이행하는 법안 및 공산주의국가와의 상업협정을 승인하는 결의안 제2192조. 특정 행위를 불승인하는 결의안 제2193조. 1974년 무역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기권한의 확대에 관한 결의안 제2194조. 의회절차에 관한 특별규칙 제6부. 의회의 보고서 제2211조. 무역정책 및 협상에 관한 의회의 고문 제2212조. 의회에 협정서의 제출 제2213조. 보고서 제7부. 미국국제무역위원회 제2231조. 명칭의 변경 제2232조. 독립예산 및 지출권한 제8부. 시장 장벽 및 불공정 무역행위의 확인 제2241조. 시장접근에 대한 장벽의 평가 제2242조. 지적재산권의 적절한 보호 또는 시장접근을 거부하는 국가의 확인을 그 내용으로 한다.